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공법)명 : 강봉과 유압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인상하는 보강구조 및 그 방법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특허 제 10-1170956 호
- 발주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통일교육원 후생관동 내진보강공사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메트로티엔씨 주식회사 / 티에스구조연구소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통일교육원 후생관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0.00%를 공사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7년 11월 28일

“발주자”

통일부 통일교육원 (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메트로티엔씨 주식회사 (印)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1016호

티에스구조연구소 주식회사 (印)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638, 2층 202호(천현동)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공법)명 : 건축구조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감쇠댐퍼 장치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특허 제 10-1568185 호
- 발주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통일교육원 후생관동 내진보강공사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메트로티엔씨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통일교육원 후생관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
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
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
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0.00%를 공사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
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

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7년 11월 28일

“발주자”

통일부 통일교육원 (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메트로티엔씨 주식회사 (印)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1016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